

Deloitte.

세무관세뉴스

2023년 8월

Story title on two lines
lorem ipsum

Story title on two lines
lorem ipsum



주목할 만한 사항:

조세행정

- 제08/2023/TT-NHNN호 시행규칙: 정부 보증이 없는 역외차입 조건의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법인소득세 ("CIT")

- 산업단지에 위치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 지원산업 ("SI") 프로젝트로 인한 금융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CIT 인센티브

입국 비자 (Immigration)

- 제127호 및 제128호 결의: E-visa, 체류허가 및 비자면제에 관한 신규규정

개인소득세 ("PIT")

- 개인이 해외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PIT 신고
- 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및 회사 여행 제공에 대한 PIT

외국인계약자세 ("FWCT")

- 외국 운송사를 대신하여 수행한 수급 및 대금지급 활동에 대한 FCWT

간접세 (Indirect Tax)

- 판매자가 구매자로 부터 규격 및 품질 불량품을 반납 받은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른 무역 할인 계산서
- 진도지연에 대해 계약자로 부터 수령금
- 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제공되고 베트남 밖에서 소비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 할인 voucher 판매에 대한 VAT
- 무역할인에 대한 VAT 계산서
- 본사와 다른 지역에서 공장 임대 활동에 대한 VAT 신고

무역 및 관세

- 수출생산목적으로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절차 및 정책 안내
- 국가단일창구 (National Single Window) 시스템을 통한 AK/KV/VK 원산지증명서 확인
- 내국 수출입 활동에 대한 관세당국의 지침
- ASEAN 조화관세명칭 2022년 보완 설명서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조세행정 (Tax Administration)

신규 규정

제08/2023/TT-NHNN호 시행규칙: 정부 보증이 없는 역외차입 조건의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3년 6월 30일 정부 보증이 없는 역외차입 조건을 규제하는 제 08/2023/TT-NHNN호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시행규칙은 제 12/2014/TT-NHNN호 시행규칙을 대체하여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신용기관 등의 단기 외화 차입 한도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주목할만한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단기차입 사용목적:

단기차입의 사용목적은 (i) 기존 역외부채를 재구조화 (restructuring) 및 (ii) 현금성 단기부채 (국내차입으로 인한 원금채무 제외)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다. 차입자는 차입금 사용의 목적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기타 프로젝트" 개념 추가

차입자는 허가당국에 의해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외에 합법적이고 정당하는 "기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역외차입을 사용할 수 있다.

3. 미사용 역외차입금 사용:

차입자는 미사용 역외차입금을 신용기관 또는 외국은행 지점에 예치할 수 있지만 예치금의 만기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미사용 역외차입금을 한번 또는 여러번으로 예치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4. 역외 차입금 사용 강화 계획:

차입금 개념, 내용 및 사용 목적 내역서 작성원칙 포함 역외 차입금 사용계획에 대한 규정이 더 명확히 명시된다

5. 역외 차입금 통화:

역외 차입금은 다음과 같은 VND로 진행되어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화로 진행해야 된다.

- 차입자는 소액금융기관이다.
- 차입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며 자본을 외화로 인출하지만 차입금을 VND으로 결제한다.

6. 역외 차입금 한도에 대한 규정추가:

6.1. 차입자가 신용기관인 경우 단기 역외차입금의 한도는 독립자본 대비 단기 미상환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업은행의 경우 30%적용, 외국은행 지점 및 기타 신용기관의 경우 150%적용).

6.2. 신용기관이 아닌 차입자의 경우:

i.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차입금: 차입금 한도는 투자 프로젝트의 총 투자 자본과 승인된 투자신청서류상 투자자의 출자 자본 간의 차액으로 정한다.

ii. 생산, 영업 또는 기타 프로젝트를 위한 차입금: 이목적으로 차입자의 중장기 국내외 차입금 잔액은 유관당국에 의해 승인된 역외차입금 사용 계획의 총 대출 자본 요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iii. 대출 구조조정을 위한 차입금: 역외대출 구조조정을 위한 차입금 신청 조건은 신규 역외 차입금이 중장기인 경우 기존 역외대출의 금액 및 상환기간 제한을 포함한다.

6.3. 차입금 한도 산정을 위한 환율 규정

차입자가 차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입금 사용/재조달 계획을 준비한 시점에 재무부 (국고)에 의해 발표된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2023년 6월 30일 제08/2023/TT-NHNN호 시행규칙)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산업단지에 위치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규정에 따른 법적 자격을 아직 충분히 갖추지 않은 (또는 아직 승인 신청 과정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수행되는 신규투자 및 확장투자 프로젝트는 지역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박닌 세무국의 2023년 7월 27일
제2876/CTBNI-TTHT호 OL)

지원산업 ("SI") 프로젝트로 인한 금융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CIT 인센티브

회사가 적격부문 (즉, 지원 산업 프로젝트)의 조건을 충족하여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 산업 제품의 스크랩 및 폐기물 처분으로 인한 소득; 인센티브를 받은 부문의 비용 & 매출과 직접 관련 환율의 차이로 인한 소득, 당좌예금 이자소득 및 적격 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소득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박닌 세무국의 2023년 7월 25일
제2848/CTBNI-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Indirect Tax) 지침 문서

판매자가 구매자로 부터 규격 및 품질 불량품을 반납 받은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되며 VAT 8% 세율을 적용된 제품은 불량으로 인해 2022년 12월 31일 이후 구매자에 의해 반납되면 판매자가 해당 반품에 대한 VAT 8%세율로 반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른 무역 할인 계산서

상품이 2022년에 판매어 VAT 8%를 적용되었지만 무역할인에 대한 계산서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경우:

- 할인이 마지막 구매 또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다음 기간에 적용된 경우, 판매된 상품의 할인 금액은 계산서 발행 당시의 과세가격 및 적용 VAT 세율을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2022년 12월 31일 이후 할인 프로그램 (기간) 종료 시 할인이 적용된 경우 판매자는 할인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판매 시점에 VAT 8%를 적용해야 한다.

(호치민시 세무국의 2023년 7월 19일 제8999/CTPHCM-TTH호 OL)

진도지연에 대해 계약자로 부터 수령금

계약자가 진도를 지연하게 되고 투자자가 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 계약상 관련 발생비용이 계약 가격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경우 진도지연으로 인한 발생비용은 VAT가 부과된다
- 계약서상 관련 발생비용이 보상금으로 명시된 경우 회사가 보상금을 받을 때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7월 19일 제53492/CTHN-TTHT호 OL)

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제공되고 베트남 밖에서 소비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해외 법인 및 개인에게 직접 제공되고 베트남 밖에서 소비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다음 증빙서류를 충분히 갖추어 지면 VAT 0%가 적용된다:

- 해외 또는 비관세 지역에 위치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 제공계약이 있다;
- 은행을 통해 수출 서비스에 대한 지급 증명서 및 규정에 따라 요청된 기타서류가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7월 19일 제8999/CTPHCM-TTH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Indirect Tax) 지침 문서

할인 voucher 판매에 대한 VAT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고객을 위한 할인 프로그램 (할인 voucher 판매)을 진행하며, 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가 필요 없지만 영수증 또는 출금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고객이 voucher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규정에 따라 VAT 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된 상품에 대한 VAT를 신고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7월 31일 제/54963/CTHN-TTHT호 OL)

무역할인에 대한 VAT 계산서

회사는 고객에게 무역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VAT 계산가격은 고객에게 할인 후 판매가격으로 정한다.

- 무역할인이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판매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할인 금액은 마지막 또는 다음번의 구매의 계산서상 조정된다.
- 무역할인이 할인 프로그램 (기간) 종료 시 적용되는 경우 조정 계산서 번호, 조정금액, 조정세액의 리스트가 포함된 조정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3년 8월 2일 제/3292/TCT-CS호 OL)

본사와 다른 지역에서 공장 임대 활동에 대한 VAT 신고

본사와 다른 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장 임대 활동에 대한 VAT는 회사의 다른 사업 활동과 같이 신고해야 한다. VAT 신고서는 본사 소재지 관할 세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의 세무국에 납부 VAT금액을 별도로 신고하고 할당할 필요가 없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7월 5일 제 47362/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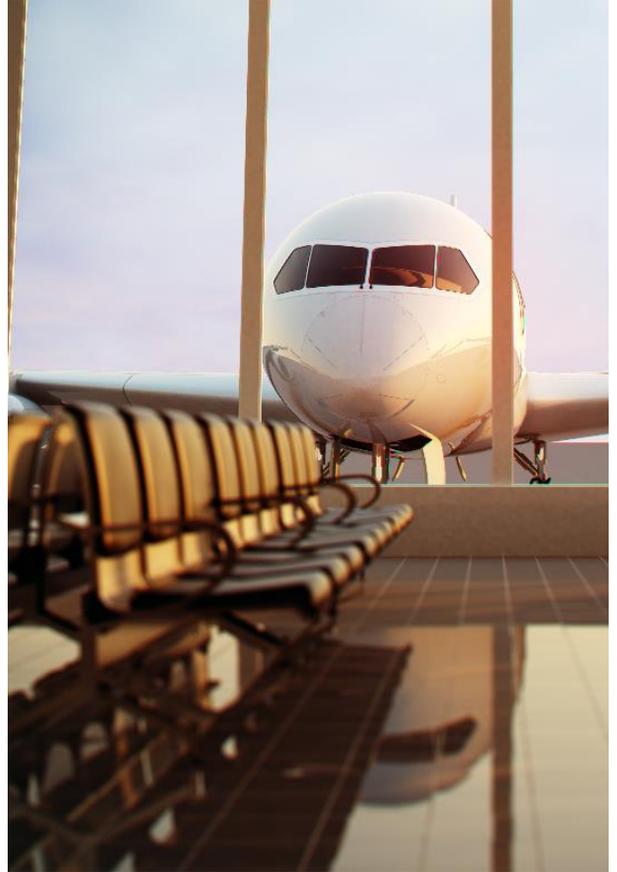
입국 비자 (Immigration) 신규 규정

제 127 호 및 제 128 호 결의: E-visa, 체류허가 및 비자면제에 관한 신규규정

베트남 정부는 최근에 베트남 E-visa 또는 비자 면제를 통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허가와 관련 특정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8월 15일부터 유효된다.

따라서 E-visa (복수 입국, 최대 90일 유효)에 대한 체류허가는 **모든 국가 및 영토에서의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이전 규정상 30일이었음).

상기 결의는 2023년 8월 14일에 공표된 비자 면제에 대한 제 128/NQ-CP 호 결의에 첨부되어 있으며, 다음 국가에서의 입국자에게 기존 규정에 따른 15일 대신에 **최대 45일까지의 체류가 허용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북아일랜드, 러시아, 일본, 한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벨로루시.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개인이 해외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PIT 신고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수행하지 않고,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과 용역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이 계약으로 받는 소득은 임금소득으로 간주된다.

해외에서 받은 임금소득이 있는 베트남 세무상 거주자는 세무국에 PIT를 직접 신고해야 한다.

(Hanoi 세무국의 2023년 8월 04일 제 56955/CTHN-TTHT호 OL)

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및 회사 여행 제공에 대한 PIT

단체 노동 협약에 명시된 대로, 직원의 그룹에게 지급되는 회사여행 비용은 구체적인 개인이름 언급 없이 단체에 지급된 것으로 명시되는 경우, 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직원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수령자의 이름이 명확히 명시되는 경우 PIT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7월 20일 제 15904/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 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외국 운송사를 대신하여 수행한 수금 및 대금지급 활동에 대한 FCWT

회사가 외국 운송사의 대리점이므로 외국 운송사를 대신하여 수금 및 대금지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외국 운송사의 국제 운임의 경우:
 - ✓ FCWT – VAT: VAT 신고, 계산 및 납부 대상이 아니다;
 - ✓ FCWT – CIT: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노선의 운임은 CIT 신고, 계산 및 납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가는 노선의 운임은 수익에 대한 CIT 2%를 신고,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
- 회사가 외국 운송사로 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CIT 신고 납부 의무가 있지만 VAT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다;
- 회사가 외국 운송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대금을 외국 운송사한테서 돌려 받을 때 VAT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수금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 회사가 외국 운송사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한 FCWT의 VAT 부분은 공제가능한 매입 VAT로 처리될 수 없다.

(Hai Phong 세무국의 2023년 7월 18일 제 3794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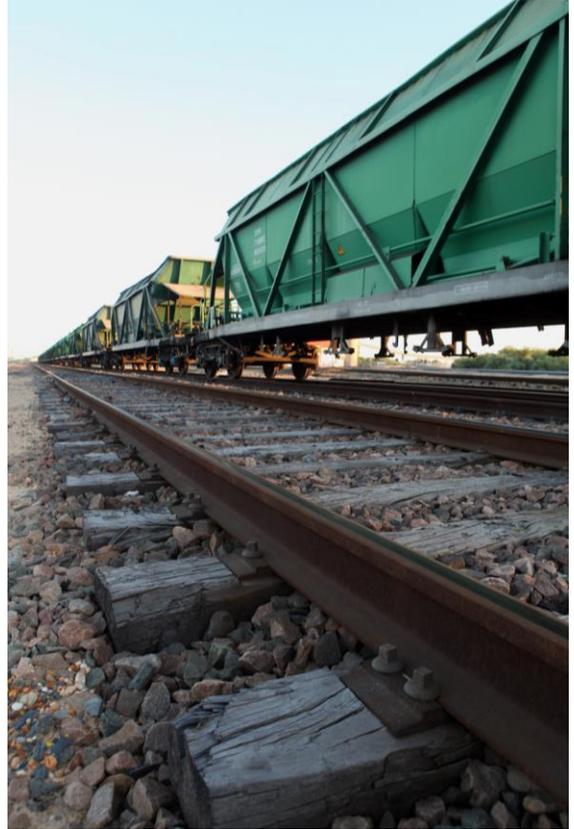
수출생산목적으로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절차 및 정책 안내

관세총국에 따르면, 수출생산목적으로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그리고 이 상품들이 가공 및 생산 목적으로 이전에 수입된 상품이었음), 현지 관세국은 2022년 11월 14일 제4826호/TCHQ-GSQL에 따라 관세 절차 및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 관세 절차는 해외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마찬가지로 수행하여 관련 세관 모드를 적용한다.
- 수출생산목적으로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수입관세 및 VAT 면제된다.

(관세총국의 2023년 7월 18일 제 3735/TCHQ-TXNK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국가단일창구 (National Single Window) 시스템을 통한 AK/KV/VK 원산지증명서 확인

2023년 7월 20일, 관세총국은 지역 관세당국에 제3790호/TCHQ-GSQL을 발행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C/O")가 있거나 아직 없는 경우에 전자 및 종이 수입 관세신고서상 AK/KV/VK C/O양식을 신고하도록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및
- National Single Window 시스템을 통해 AK/KV/VK의 C/O 양식의 신고 정보의 접수, 확인 및 처리단계별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관세총국의 2023년 7월 20일 제 3790/TCHQ-GSQL 호 OL)

ASEAN 조화관세명칭 2022년 보완 설명서

2023년 7월 24일, 관세총국은 ASEAN 조화관세명칭 ("AHTN")에 대한 보완 설명서 ("SEN") 발행을 통보하는 제3866호/TCHQ-TXNK호 공문을 발행했다.

SEN 2022는 2022년 6월 8일자 제31/2022/TT-BTC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2022년 베트남 수출입품 목록에 따라 수출입품 분류에 대한 참조 가이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관세총국의 2023년 7월 24일 제 3866/TCHQ-TXNK호 OL)

내국 수출입 활동에 대한 관세당국의 지침

2023년 8월 8일, 관세총국은 기업협회로부터 내국 수출입 활동에 대한 문의 및 제안을 답변하기 위해 제4146호/TCHQ-GSQL호 공문을 발행했다.

주요 내용:

- 베트남 기업과 거래 되는 물품으로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배송 및 수령하도록 지정하는 외국 상인은 제 08/2015/NĐ-CP 호 시행령 제35조, 1항, c점에 따른 내국 수출입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상업 존재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관세총국은 비즈니스 거래의 성격 (베트남 영토를 물리적인 이탈 없이 진행됨)에 부합하는 규정에 대한 적절한 개정 및 보완을 제안하기 위해 내국수출입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 제 08/2015/NĐ-CP호 시행령 제35조, 1항, c점의 규정을 유지하자는 기업협회의 제안은 상업, 외국 무역 관리에 대한 현행규정 및 비즈니스 거래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

(관세총국의 2023년 8월 8일 제 4146/TCHQ-GSQL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